

『禮記淺見錄』의 편찬 경위와 權近의 禮論

姜 文 植*

머리말

1. 『禮記淺見錄』의 편찬 경위
2. 『禮記淺見錄』의 체재와 특징
 - (1) 체재와 인용 서적
 - (2) 편차 조정의 특징과 의의

3. 『禮記淺見錄』에 반영된 權近의 禮論

- (1) 禮論의 기본 개념
 - (2) 禮를 통한 '安民'의 실현
- 맺음말

머리말

여말선초는 충렬왕대 이후 元으로부터 수입된 성리학이 점차 정치·사회의 주도적인 사상으로 자리잡아 가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성리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고려의 주도 사상이었던 불교를 대체하면서 조선 건국의 기본 이념으로 역할하였다는 정치·사회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반면 이 시기의 학자들이 성리학을 어느 정도 연구하고 이해하였는가 하는 이론적 측면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權近(1352~1409)은 여말선초 관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入學圖說』과 『淺見錄』 등의 경학 저술을 지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권근 이전에도 經典 주석이 이어졌다는 기록들이 있지만 현재 전해지지 않으므로, 그의 저술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經學 관련 저술이다. 또 이 책들은 성리학에 대한 여말 학자들의 이해 정도가 반영된 저술이라는 점에서 여말선초의 학문적 수준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禮記淺見錄』은 『淺見錄』 중에서 가장 완전한 체재를 갖추고 있고 내용도 다른 『淺見錄』들에 비해 풍부하기 때문에 권근의 경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았다.¹⁾ 그러나 『禮記淺見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曲禮」·「樂記」 등 권근의 주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일부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禮記淺見錄』의 저술 경위, 서술 구조상 특징 등 저술 전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부족하다. 또 대부분 철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여서 『禮記淺見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여말선초의 경학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

* 필자 : 규장각 조교

1) 『禮記淺見錄』에 대한 주요 논문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權正顔, 1986, 「權陽村의 『禮記淺見錄』 연구」, 『韓國哲學思想論究』 제1집.

琴章泰, 1997, 「陽村 權近의 經學思想」, 『朝鮮前期의 儒學思想』, 서울대학교 출판부.

金錫濟, 1999, 「權近 『禮記淺見錄』 연구—禮學思想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1장에서는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禮記淺見錄』의 저술 경위를 추적해 본 다음, 2장에서 『禮記淺見錄』의 서술 체재 및 그것이 가지는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3장에서는 『禮記淺見錄』에 반영되어 있는 권근의 禮論과 經世論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이 저술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禮記淺見錄』의 편찬 경위

『禮記淺見錄』은 알려진 바와 같이 권근이 스승 李穡의 遺命을 받아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은 『禮記』가 秦始皇의 焚書坑儒로 망실된 이후 漢儒들이 타고 남은 나머지를 모아 편집한 책으로 자료를 수집한 순서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편찬의 잘못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제자 권근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禮記』의 정리를 부탁하였다.²⁾ 권근은 이러한 유명에 따라 『禮記』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그 결과가 『禮記淺見錄』으로 나타났다.

『禮記淺見錄』의 저술 과정에 대해서는 『陽村集』의 「陽村先生年譜」와 『應制詩註』에 수록되어 있는 權學의 「陽村先生文忠公行狀」, 그리고 『太宗實錄』 등에 몇 가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에 따르면 문헌에는 『禮記淺見錄』 저술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의 기사들만 있고 그 중간 과정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당시의 정황과 권근의 행적을 통해 저술 과정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다.

<표 1>을 보면, 권근이 『禮記淺見錄』을 비롯한 5경의 『淺見錄』을 저술하기 시작한 것은 1391년 3월이다. 그러나 실제로 권근은 그 이전에 이미 5경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가 1390년 7월에 저술한 『入學圖說』을 통해 알 수 있다.³⁾ 『入學圖說』에는 각 『淺見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入學圖說』에 있는 「中庸分節辨議」와 「大學指掌之圖」의 내용이 『禮記淺見錄』의 「中庸」·「大學」에 실려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⁴⁾ 이는 『入學圖說』이 5경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저술임을

2) 『禮記淺見錄』 권1, 「曲禮 上」.

3) 『陽村集』 卷首, 「陽村先生年譜」.

4) 『入學圖說』의 내용 중 각 『淺見錄』에 수록된 도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건록	『入學圖說』 도설명
詩淺見錄	周南編次之圖, 變風十三國之圖
書淺見錄	五經體用合一之圖, 五經各分體用之圖,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上下, 周天三辰之圖, 一棊生閏之圖, 天地豎看之圖, 天地橫看之圖, 土圭測影之圖
春秋淺見錄	春王正月橫看分析之圖
周易淺見錄	河圖五行相生之圖, 洛書五行相剋之圖, 太極生兩儀四象八卦之圖, 伏羲先天八卦圖, 文王後天八卦圖, 陰陽六九爲老圖
禮記淺見錄	大學指掌之圖, 中庸分節辨議

〈표 1〉 『禮記淺見錄』 관련 문헌기록

출전	내용
年譜	홍무 24년(1391) 정월에 서울에 가서 謝恩하고 3월에 충주 陽村으로 돌아와 禮經의 절차를 考定하고 또 周易·詩經·尙書·春秋에 대하여 淺見錄을 저술하였다.
	소장을 올려 한가한 곳에 나아가 禮經의 절차에 대한 고정을 끝마칠 것을 청했으나 왕(태종)이 윤택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行狀	辛未年(1391) 봄에 종편이 허락되니 충주 양촌의 舊業으로 돌아가 禮經의 절차를 고정하고 또 易經·詩經·書經·春秋 등에서 先儒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가리고 그 조목을 논하여 이름하기를 淺見錄이라 하였다.
	甲申(1404)에 글을 올려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히 지내면서 禮經의 편차를 끝내게 해 달라고 하자 상계서 불허하며 이르기를 “司馬光이 資治通鑑을 편차하였으되 일찍이 해석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고, 三館의 文士 2인에게 명하여 날마다 그 집에 가서 翰墨을 제공하게 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정서해서 바치니 상계서 탄상하면서 書局에 명하여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太宗實錄	參贊議政府事 권근이 禮經淺見錄을 찬집하고자 하여, 箋을 올려 辭免하기를 구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太宗實錄』 권8, 太宗 4년 11월 丙寅).
	권근이 上書하여 禮記淺見錄을 정서한 공으로 金泮과 金從理를 薦擧하니 관직을 제수하였다(『太宗實錄』 권10, 太宗 5년 10월 己卯).
	吉昌君 권근이 禮記淺見錄을 찬하여 올리었다(『太宗實錄』 권12, 太宗 6년 11월 己酉).

보여준다. 따라서 권근은 1390년 이전부터 이미 5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가 『入學圖說』 및 『淺見錄』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禮記淺見錄』이 완성된 것은 1406년(태종 6) 11월이다. 다른 4경의 『淺見錄』들이 1391년부터 권근이 조선조에 출사한 1393년 2월 사이에 완성된 것⁵⁾과는 달리 『禮記淺見錄』은 완성까지 약 16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권근이 지속적으로 저술에 몰두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당시 권근이 처했던 상황들을 고려할 때 『禮記淺見錄』의 저술 기간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1391년(고려 공양왕 3) 3월 권근이 충주 양촌에 정착한 이후 1393년(태조 2) 3월에 태조의 어가를 따라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약 2년의 기간이다. 이 2년간의 권근의 행적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기록이 거의 없는데, 이는 그가 이 시기의 대부분을 지방에 은거한 채 학문 연구와 저술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4경의 『淺見錄』이 완성되었으며, 『禮記淺見錄』도 상당 부분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1393년 3월 출사 이후 1398년 8월 왕자의 난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이때는 권근이 조선조에 출사한 초기로서, 주로 문헌·교육 계통에 종사하였을 뿐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비록 양촌에 은거할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연구와

5) 『陽村集』 卷首, 「陽村先生年譜」.

저술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禮記淺見錄』에 수록된 河崙의 서문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일찍이 太祖高皇帝때에 京師에 들어갔는데 황제가 대면하고는 그 학식이 있음을 알고 명하여 賦와 詩를 짓게 하였고 文淵閣에 나가도록 하였다. 거기에서 중국의 大儒 劉公·董公 등과 더불어 매일 서로 접하여 聞見이 더욱 바르게 되고 나아간 바가 더욱 깊어졌다.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는 讜言으로 꺼림을 받게 되자 여러 해 동안 한가하게 지내면서 이 經에 대해 專意參究하여 簡編을 다시 차례짓고 經과 傳을 나누며 文義가 의심스러운 것을 모두 다 변론하였다. 제목을 ‘禮記淺見錄’이라고 하였다.⁶⁾

여기에서 ‘꺼림을 받아 여러 해 동안 한가롭게 지냈다’고 한 것이 정확히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권근이 귀국 직후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받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사헌부에서는 鄭摠 등이 그대로 明에 억류되어 있던 상황에서 권근만 돌아온 것과 귀국 과정에서 금을 노자로 사용한 것 등을 들어서 권근을 탄핵하였다.⁷⁾ 『太祖實錄』에는 사헌부의 탄핵을 鄭道傳이 사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후의 정도전과 권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 기록은 태종대에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과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국공신들 사이에서 표전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권근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견제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음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권근은 정치적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한가히 지내면서 학문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따라서 『禮記淺見錄』의 저술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명나라 사행은 『禮記淺見錄』 저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권근은 1396년(태조 5) 7월부터 1397년 3월까지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 기간 중 그는 文淵閣에서 당시 명의 석학들과 교류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학문 경향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때의 경험이 귀국 이후 『禮記淺見錄』을 저술하는 데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것이다. 다른 기록이 없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禮記淺見錄』 권11의 「內則」부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黃震의 『黃氏日抄』가 인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러한 영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⁸⁾

6) 『禮記淺見錄』 卷首, 「禮記淺見錄序」(河崙 著). “嘗在太祖高皇帝時 入朝京師 帝賜對知其有學識 命題賦詩 使待詔文淵閣 得與朝之大儒劉董公輩日相接 聞見益正 所造益深矣. 及蒙恩還國 讜言見忌 居閑數年 乃於是經 專意參究 更次簡編 分爲經傳 文義之可疑者 皆盡辯論 題其目曰 禮記淺見錄.”

7) 『太祖實錄』 권11, 太祖 6년 4월 壬寅.

8) 『禮記淺見錄』 권11 「內則」의 題辭에는 “이 편 이후로 비로소 黃氏日抄之書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內則」을 주석할 즈음에 『黃氏日抄』를 처음 입수하여 참고하였음을 의미한다. 어떤 경로를 통해 『黃氏日抄』를 입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태조대의 使行이 입수 경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는 1398년 8월 왕자의 난 이후부터 『禮記淺見錄』이 완성된 1406년까지의 기간이다. 왕자의 난으로 태종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권근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時政을 논한 상소 활동이나 대사헌으로서의 언론 활동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정치적 비중과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와 저술에 할애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때가 『禮記淺見錄』 저술이 가장 부진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禮記淺見錄』은 계속 미완성의 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이에 권근은 1404년(태종 4) 11월에 『禮記淺見錄』 완성을 위해 사직을 청하는 소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태종은 권근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고 직임을 계속 맡으면서 저술을 완성하도록 명하였고, 1405년 8월 경에 金泮과 金從理를 繕寫官으로 임명하여 『禮記淺見錄』의 정서를 돕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권근은 1404년 11월부터 1405년 8월까지 『禮記淺見錄』의 후반부의 미진한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 1405년 8월부터 『禮記淺見錄』의 정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禮記淺見錄』의 정서는 1405년(태종 5) 10월까지 약 3개월동안 시행되었다.⁹⁾ 그런데 『太宗實錄』에는 1406년 11월에 “권근이 『禮記淺見錄』을 찬하여 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권근은 『禮記淺見錄』의 정서가 끝나고 13개월이 지난 후에야 왕에게 책을 올렸다. 이 13개월 동안 권근이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예기천전록』 전체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또 이 기간 중에 권근은 부친상을 당하였으며,¹⁰⁾ 그 자신도 건강이 좋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므로¹¹⁾ 검토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종은 1406년 11월에 권근이 『禮記淺見錄』을 올리자, 이를 經筵의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 교서관에 명하여 鑄字로 간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禮記淺見錄』은 1407년에 처음 활자로 간행되었다.¹²⁾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禮記淺見錄』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禮記淺見錄』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에서 다시 보겠지만 체재 및 내용 면에서 『禮記淺見錄』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전반부가 편차 조정도 많이 이루어졌고 주석도 충실하며 『禮記集說』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한 반면, 후반부는 주석이나 편차 조정이 소략하고 『禮記集說』도 별다른 검토없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권근

9) 권근은 1405년(태종 5) 10월에 상소를 올려 김반·김종리 등의 공으로 『禮記淺見錄』을 완성할 수 있었으니 이들에게 벼슬을 더 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를 통해 1405년 10월경에 『禮記淺見錄』의 정서가 끝났음을 알 수 있다.

10) 『太宗實錄』 권10, 太宗 5년 12월 辛巳.

11) 태종은 권근이 喪中에 있으면서 오래도록 병에 차도가 없자 肉膳을 하사하였다(『太宗實錄』 권12, 太宗 6년 8월 庚戌).

12) 『禮記淺見錄』 卷首, 「禮記淺見錄序」(河崙 著).

이후에도 『禮記淺見錄』은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1407년에 간행된 校書館本은 그 部數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 널리 유포되지 못하였다. 이에 1418년(太宗 18)에 당시 濟州牧使였던 河澹이 다시 목판으로 간행하였으며, 1706년(肅宗 32)에 濟州牧使 宋廷奎가 河澹이 간행한 판본에 약간의 補訂을 가하여 새로 간행하였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奎 5128)은 1706년 간행본이다.

이 왕자의 난 이후 정치적 활동이 많아지면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禮記』의 후반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禮記淺見錄』은 여전히 미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다.

2. 『禮記淺見錄』의 체재와 특징

(1) 체재와 인용 서적

『禮記淺見錄』은 체재면에서 다른 4경의 『淺見錄』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禮記淺見錄』은 총 26권 1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周易淺見錄』이 3권 1책이고, 『詩淺見錄』은 19개 조항, 『書淺見錄』은 32개 조항, 『春秋淺見錄』은 3개 조항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거질이다. 바로 이 점이 『禮記淺見錄』 저술에 긴 시간이 소요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禮記淺見錄』 각 권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서술 방식에서도 『禮記淺見錄』은 다른 『淺見錄』들과 다르다. 『禮記淺見錄』은 ‘禮記』 원문 → 陳澧의 『禮記集說』 → 권근의 주석’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禮記』의 원문을 큰 글씨로 쓴 다음 元代의 학자 陳澧가 지은 『禮記集說』의 주석을 작은 글씨로 기록하고, 이어 한 줄을 내려서 권근 자신의 주석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경전의 원문을 쓰지 않고 자신의 견해만을 기록한 『詩經』·『書經』·『春秋』의 『淺見錄』이나, 經文 중에서 주석하고자 하는 구절만 뽑아 쓴 다음 자신의 주석을 기록한 『周易淺見錄』의 서술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2> 『禮記淺見錄』의 구성

권	편명	권	편명
1·2권	曲禮 上·下	14권	小儀, 學記
3·4권	檀弓 上·下	15·16권	樂記 上·下
5권	王制	17·18권	雜記 上·下
6권	月令	19권	喪大記
7권	曾子問, 文王世子	20권	祭法, 祭義
8권	禮運	21권	祭統, 經解, 哀公問
9권	禮器	22권	仲尼燕居, 孔子閒居, 坊記, 中庸
10권	郊特牲	23권	表記, 緇衣
11권	內則	24권	奔喪, 問喪, 服問, 問傳, 三年問, 深衣
12권	玉藻, 明堂位	25권	投壺, 儒行, 大學, 冠義, 昏義, 鄉飲酒義
13권	喪服小記, 大傳	26권	射義, 燕義, 聘義, 喪服四制

① 『禮記』 원문

『禮記淺見錄』에는 「檀弓 下」 후반부의 일부가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는 『禮記』의 원문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권근은 『禮記』 원문을 기록할 때 원래의 순서대로 쓰지 않고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위치가 바뀐 문장의 끝에 이 문장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혀놓았다. 이는 권근이 『禮記淺見錄』을 저술할 때 이색의 유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색은 『禮記』의 가장 큰 문제점이 편차의 착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점을 바로잡아 줄 것을 권근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권근은 『禮記』의 거의 전편에 걸쳐서 편차 조정을 시도하였다. 『禮記』 원문의 편차 조정에는 권근이 『禮記』를 이해하는 관점과 기준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주석 내용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¹³⁾

한편 일부 편들은 『禮記』 원래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또 원문은 쓰지 않고 자신의 주석만 기록해 놓은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권6의 「月令」과 권24~26의 「奔喪」 이하 16개 편 등이 이에 해당한다. 「月令」은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서술한 원문의 특성상 편차 조정이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권24 이하 16개 편은 「奔喪」의 주석에서 “이 편은 글이 간략하고 일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절차가 매우 분명하다. 問喪·服問·問傳·三年問 등의 편들은 모두 錯亂된 것이 없다”¹⁴⁾라고 한 것이나 「冠義」의 주석에서 “이 편 이하는 모두 문장이 착란되지 않았다”¹⁵⁾라고 한 것을 볼 때, 원문의 순서가 완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차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문을 기록하지 않고 자신의 주석만 수록한 편은 「大學」과 「中庸」인데, 이는 아마도 『禮記集說』에서 「大學」과 「中庸」의 원문을 수록하지 않았던 예를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② 陳澧의 『禮記集說』

『禮記』의 원문 다음에는 陳澧의 『禮記集說』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권근이 『禮記集說』을 『禮記淺見錄』의 기본 주석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禮記淺見錄』에는 『禮記集說』이 모두 실린 것이 아니라 일부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권근의 제자 김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의 스승(권근)이 말하기를, “내가 陳氏의 集說을 먼저 쓴 뒤에 내가 지은 淺見錄을 쓰고자 하였으나, 다만 나의 병이 위독하여 해가 서산에 닿은 것 같으니, 만약 진씨 집설의 수많은 말을 다 쓴 뒤에 천견록을 쓰려고 한다면, 책을 미처 이룩하지 못하고 밝은 세상을

13) 『禮記』 편차 조정의 기준 및 그 의의에 대해서는 본고의 2장 2절을 참조.

14) 『禮記淺見錄』 권24, 「奔喪」, “次篇 文簡而事備 節次深明. 問喪·服問·問傳·三年問等篇 皆不錯亂.”

15) 『禮記淺見錄』 권25, 「冠義」, “次篇以下 文皆不差.”

하직할까 두렵다. 이 때문에 진씨 집설을 간략하게 들어 쓰고 다음에 천견록을 써서 올린다”라고 하였습니다.¹⁶⁾

즉 『禮記集說』을 모두 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를 생략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禮記淺見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제로 이와 반대였음을 알 수 있다. 「曲禮」·「檀弓」·「王制」 등 편차 조정이나 주석에 심혈을 기울였던 전반부의 여러 편에서는 『禮記集說』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반면, 편차 조정이나 주석이 거의 가해지지 않은 권22~26의 뒷부분은 오히려 『禮記集說』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禮記淺見錄』을 저술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으므로 『禮記集說』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필요없다고 판단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기록한 반면, 조선에 출사한 이후 말년에 『禮記』의 뒷부분을 정리할 때에는 『禮記集說』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주석을 가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禮記集說』 전문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禮記集說』의 생략은 전적으로 권근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禮記集說』과의 비교를 통해 생략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편차 조정의 결과로 의미가 없어진 것이나 필요 이상으로 장황하고 번거롭게 설명한 내용들을 생략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정 주석은 받아들이고 다른 주석은 삭제한다거나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은 기록하고 동의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의 일정한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¹⁷⁾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권근은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禮記集說』을 생략했다기보다는 『禮記集說』의 내용이 『禮記淺見錄』의 저술 목적, 편차 조정의 결과 등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생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¹⁸⁾

③ 권근의 주석

『禮記集說』 다음에는 권근의 주석이 수록되어 있다. 권근은 『禮記』의 모든 문장을 주석하지 않고 필요한 문장에 대해서만 주석을 가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禮記集說』만 기록해 놓았다. 또 자신의 주석을 『禮記集說』보다 한 칸 내려서 ‘近按’이라고 쓴 다음 기록하였다. 이는 그가 『禮記集說』의 주석을 인정하고 수용하였으며, 그 기초 위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禮記淺見錄』에는 본문 주석 외에 권근의 견해가 나타난 것으로 題辭와 結辭가 있다.¹⁹⁾ 題辭는 각 편의 편명 아래에 기록한 것으로 편이 지어진 과정, 편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 해석과 평가 등을 서술한 것이다.²⁰⁾ 結語는 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편

16) 『世宗實錄』 권59, 世宗 15년 2월 癸巳.

17) 권근의 주석 중에는 『禮記集說』에 수록된 기존의 주석이 오류임을 지적하고 나름의 새로운 주장을 편 내용들이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 반박한 『禮記集說』의 내용을 같이 기록하여 자신의 주장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 『禮記淺見錄』의 저술 목적에 대해서는 본고 2장 2절을 참조.

19) 權正顔, 1998, 「禮記淺見錄 解題」, 『韓國經學資料集成 禮記(一)』,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부분이다.²¹⁾

『禮記淺見錄』에 수록된 권근의 주석은 내용상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장·절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禮記淺見錄』의 전체 주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권근은 『禮記』 각 편을 주제에 따라 여러 개의 장·절로 분류한 다음, 각 장·절의 끝부분에 “이 장(절)은 ○○에 대하여 논하였다”라고 내용을 요약·제시하여 각 장·절의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편차 조정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禮記』의 원문이나 『禮記集說』 등 기존 주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름의 재해석을 시도한 내용이다. 권근은 『家語』·『書經』·『詩經』 등의 저술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특히 『書經』과 『詩經』을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신뢰하였다.²²⁾ 『禮記』 원문의 오류를 지적한 경우는 「檀弓 上」, 「文王世子」, 「曾子問」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²³⁾ 권근은 漢儒들이 『禮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전후 관계를 잘 살피지 않고 수집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였다. 이는 『詩經』이나 『書經』을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던 태도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권근이 『禮記』를 완전한 經典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禮記集說』에 수록된 주석의 오류를 지적한 경우는 총 53회이다.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문구 해석이나 구두점·글자 등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편차 조정의 결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면서 기존의 주석을 오류로 판정한 경우도 있다.²⁴⁾ 그러나 『禮記集說』의 禮에 관한 기본적인 정신이나 노선을 부정한 경우는 없다.

20) 題辭는 대부분의 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曲禮」·「內則」·「經解」·「中庸」·「緇衣」·「問喪」·「服問」·「問傳」·「三年問」·「深衣」·「投壺」·「大學」·「昏義」·「鄉飲酒義」·「射義」·「燕義」·「聘義」·「喪服四制」 등에는 빠져 있다.

21) 結語는 「曲禮」·「曾子問」·「文王世子」·「禮運」·「明堂位」·「喪服小記」·「小儀」·「學記」·「樂記」·「祭義」 등 10개 편에만 수록되어 있다.

22) 『禮記淺見錄』 권16, 「樂記 下」.

23) 『禮記』 원문의 오류를 지적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편명	오류 구절	권근의 지적 내용
檀弓 上	少孤不知其墓 殯於衢路 問於他人 然後得合葬	공자는 묘소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合葬의 禮를 앞두고 敬愼의 뜻을 다하기 위해서 옛 사람에게 질문한 것이다. 공자가 太廟에 들어갔을 때 일마다 질문한 일과 같은 의미이다.
文王世子	周公踐阼	원래 經文은 ‘相踐阼’ 인데 기록자가 ‘相’ 한글자를 빠뜨렸다. 이것이 결국 王莽의 禍를 불렀다.
禮運	故君者所明也~人皆愛其死而患其生	人君이 矜高·拒諫·飾非하는 마음을 열어주었다.

24) 『禮記淺見錄』 권1, 「曲禮 上」 傳 4장, 傳 7장.

傳 7장의 주석에서 권근은 “앞에서는 모두 동등한 사람들이 서로 賓主가 되는 禮를 말하였고, 이 절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서로 賓主가 되는 것으로 말하였다. 舊說에서는 ‘이는 타국에 聘問하는 禮로서 같은 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옛 글이 위로 大夫와 士가 出聘하는 禮를 말한 것과 접해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편차 조정이 기존의 주석을 부정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셋째는 권근 자신의 禮論이나 經學論을 피력한 내용이다. 「禮運」과 「樂記」에서 天人合一論을 피력한 것, 「禮器」에서 禮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정리한 것, 「祭法」에서 堯·舜·禹의 宗統繼承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 「祭義」에서 孝와 제사에 대한 인식을 피력한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들은 전체 주석에서 양적인 비중은 크지 않지만 권근의 학문적 성향과 깊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④ 인용 서적

『禮記淺見錄』에는 따로 인용서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근이 어떤 서적을 참고하였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권근의 주석을 검토해 보면 『禮記淺見錄』의 기본 주석인 『禮記集說』을 비롯하여 黃震의 『黃氏日抄』, 饒魯의 경학 저술 등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禮記集說』은 元代의 학자 陳澧가 『禮記』에 관한 여러 주석들을 종합하고 여기에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만든 책이다. 陳澧는 字가 可大, 號가 雲莊·北山이며 都昌 출신으로, 부친 陳大猷에게 학문을 배웠다. 陳大猷는 饒魯를 사사하여 '朱子 → 黃幹 → 饒魯'로 전해지는 학통을 이어받은 인물로서, 『禮記集說』의 저술은 사실상 陳大猷 단계에서 시작되었다. 즉 陳大猷가 『禮記』에 대한 많은 강론을 통해 새로운 주석서의 기초 작업을 하였으며, 陳澧가 이를 이어받아 보다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여 『禮記集說』을 완성하였다. 『禮記集說』에는 漢代 鄭玄의 주석에서부터 宋代 학자들의 주석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종의 『禮記』 연구서가 인용되었다.²⁵⁾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禮記集說』에 대해 “道學正論은 程子·朱子を 종주로 삼았다”²⁶⁾라고 하였는데, 이는 『禮記集說』이 주자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저술로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또 “비록 高論은 없지만 초학자들이 읽으면 지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²⁷⁾는 평가는 『禮記集說』이 다른 『禮記』 주석들에 비해서 禮의 본질, 의례의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점이 권근이 『禮記集說』을 『禮記淺見錄』의 기본 주석으로 삼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권근은 『禮記淺見錄』에서 깊이 있는 예론을 피력하기보다는 편차 조정을 통해 禮를 분류·정리함으로써 보다 쉽게 『禮記』를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였는데, 초학자들에게 알맞은 『禮記集說』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5) 『禮記集說』에 인용된 주요 서적은 다음과 같다.

漢鄭氏註, 唐孔氏疏, 儀禮古注疏, 儀禮經傳通解, 楊氏祭禮通解, 陸氏經傳釋文, 九經注疏, 許氏說文, 杜氏通典, 程氏通志略, 程氏遺書, 程子粹言, 張子語錄, 朱子四書, 朱子語類, 春秋纂例, 三山陳氏禮書, 方氏集解.

26)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經部 禮類 「禮記集說」. “道學正論 宗程子朱子.”

27) 위의 책, “其書雖無高論 而初學讀之 極易了然也.”

『禮記淺見錄』의 권11 「內則」부터는 『禮記集說』과 더불어 宋代의 학자 黃震이 지은 『黃氏日抄』의 내용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²⁸⁾ 『黃氏日抄』는 『慈溪黃氏日抄分類』라고도 한다. 본래 97권인데, 그 중 1~68권은 黃震이 經·史·子·集의 諸書を 열람하면서 초록한 札記이다. 권근은 『黃氏日抄』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어떤 경우에는 『禮記集說』을 모두 생략하고 『黃氏日抄』의 내용만 기록하기도 하였다.²⁹⁾ 여기에는 『禮記集說』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黃震은 자가 東發이고 浙江 慈溪 출신으로, '朱子 → 輔廣 → 余端臣 → 王文貫'의 학통을 이어받은 인물이다.³⁰⁾ 黃宗羲의 『宋元學案』에는 黃震이 浙江 寧波 지역에서 주자를 중주로 한 대표적인 학자일 뿐만 아니라, 何基 등 北山 四先生과 함께 송대 端平 이후 閩·浙·漳 지역의 주자 후학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³¹⁾ 이는 비록 黃震이 주자학의 수정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³²⁾ 기본적으로 『黃氏日抄』가 성리학적 입장에서 지어진 저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권22의 「中庸」에는 宋代의 학자 饒魯의 학설이 인용되어 있다. 饒魯는 字가 伯興·仲元, 號가 雙峰이며 江西 餘乾 사람으로, 黃幹의 高弟이자 주자의 再傳 제자이다. 황간의 문하에서는 金華·江右 양 학파가 있었는데 饒魯는 그 중 강우학파의 태두이다. 그의 경학 저작으로는 『五經講義』·『語孟記聞』·『學庸纂述』·『西銘錄』·『近思錄註』 등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황종의가 『宋元學案』을 편찬할 당시에 이미 그의 저작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³³⁾ 권근이 『中庸』의 장·절 분류에 饒魯의 학설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권근이 饒魯의 『學庸纂述』, 혹은 『學庸纂述』의 내용이 실려 있는 다른 서적을 참고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권근이 『禮記淺見錄』 저술에 참고했던 『禮記集說』, 『黃氏日抄』, 그리고 饒魯의 저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권근의 주석에는 “先儒曰”이라고 하여 다른 학설들을 인용한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禮記集說』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지만 일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어서 권근이 위의 3종 이외에 더 많은 서적을 참고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권근이 이 서적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권근의

28) 권정안과 김석제의 연구에서는 『黃氏日抄』를 黃幹의 저술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이것은 黃震의 저술이며 황간의 저작 중에는 『黃氏日抄』라는 책이 없다. 이는 아마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黃氏'라는 서명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인 듯하다.

29) 『黃氏日抄』가 인용된 편과 인용 구절의 수는 다음과 같다.

內則	玉藻	明堂位	喪服小記	小儀	學期	表記	계
9개	5개	5개	1개	3개	1개	3개	27개

30) 『宋元學案』 권64, 「潛庵學案」.

31) 『宋元學案』 권86, 「東發學案」 全祖望案語.

32) 『宋元學案』 권86, 「東發學案」 黃百家案語.

33) 侯外廬 저, 박완서 역, 1995, 『송명이학사 2』, 이론과 실천, 424면.

가계나 활동 경력을 보면, 그가 중국의 학문적 성과를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⁴⁾ 권근 가계의 주요 인물들은 고려말 중앙의 정계와 학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權傳·權漢功·李齊賢·李穡 등은 당대를 대표하는 석학이었으며, 특히 權傳·權漢功 등은 중국에서 수입된 經學書들을 考閱·정리하는 등 당시 관학 진흥을 주도하였다. 또 그의 가계에는 使行 등으로 중국을 자주 왕래한 인물이 많으며 권근 자신도 사신으로 2차례 중국에 다녀왔다. 시행 과정에서 이들은 중국의 여러 문인·학자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당시 중국의 학문 경향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과 학문적 축적은 家學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권근은 바로 이러한 家學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송·원대의 여러 경학 저술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禮記淺見錄』을 비롯한 여러 저술에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2) 편차 조정의 특징과 의의

앞에서 보았듯이 권근은 『禮記淺見錄』에서 『禮記』 원문의 순서를 새롭게 조정하여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禮記』를 이해하는 권근 나름의 관점과 기준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禮記淺見錄』만의 특징과 의의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禮記淺見錄』에서 적용된 편차 조정의 방식과 기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권근이 『禮記』 원문의 편차를 조정한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禮記』의 원문을 '經'과 '傳'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한 편으로는 「曲禮」·「禮運」·「曾子問」·「樂記」 등을 들 수 있다. 「曲禮」는 원래 상·하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권근은 이를 하나로 통합한 다음 『大學章句』의 체재를 모방하여 「曲禮」 첫머리에 나오는 “曲禮曰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를 經으로, 그 이하의 내용들은 經을 해설하는 傳으로 규정한다. 「樂記」의 경우에는 원래 한 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하 두 편으로 나눈 다음 상편을 經으로, 하편을 傳으로 규정하였다. 「禮運」과 「曾子問」은 앞의 두 경우와 조금 다른데, 즉 『禮記』 원문 중에서 공자의 말과 『禮記』 기록자의 말을 구분하여 전자를 經으로 규정하고 후자는 經을 해설하는 傳으로 보았다. 이처럼 『禮記』를 經과 傳으로 구분하는 태도는 『禮記』를 완전한 經典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둘째는 『禮記』 원문을 같은 주제의 내용끼리 묶어서 장과 절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편차 조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曲禮」에서는 뒤섞여 있는 여러 의례들을 父子·君臣·

34) 권근의 가계와 활동 경력에 관한 내용은 姜文植, 2001, 「權近의 生涯와 交遊人物」, 『韓國學報』102를 참조.

35) 이와 같은 인식은 『禮記』 원문의 오류를 지적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장 1절 참조).

男女·長幼·朋友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같은 주제의 내용끼리 묶어서 구별해 놓았다.³⁶⁾ 「曾子問」에서는 먼저 전체의 내용을 凶禮와 吉禮로 나눈 다음 다시 凶禮는 君喪과 私喪, 吉禮는 朝祭·冠昏·外事師行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³⁷⁾ 이외에도 권근은 대부분의 편에서 같은 주제의 내용끼리 묶어서 장·절을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순서의 변동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禮記淺見錄』에 기록된 『禮記』 원문은 원래의 순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한편, 권근은 같은 주제의 장·절 안에서 서술 순서를 정할 때에도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귀한 신분의 禮를 먼저 서술하고 천한 신분의 禮를 나중에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음의 글은 이 원칙을 잘 보여준다.

이 절은 먼저 天子와 后夫人의 칭호를 말하였고 다음으로 王朝의 관원을 말하였고, 다음으로 列國의 諸侯와 부인 이하의 칭호를 말하였으며, 다음으로 열국의 大夫를 말하였다. 舊本에는 많이 次序를 잃었으므로 이제 다 바로잡았다.³⁸⁾

여기에서 “舊本の 次序를 바로잡았다”라고 한 평가는 신분의 상하·귀천 구분이 편차 조정의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준다. 권근은 「檀弓 下」에서 “尊卑의 순서로 편차하였다”³⁹⁾라고 하였고, 「王制」에서는 爵祿의 제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尊卑의 차등과 内外의 분별이 잘 갖추어졌다”⁴⁰⁾라고 하였으며, 「喪服小記」에서도 “舊本은 착란되어 차서가 없으므로 이제 우선 귀한 것부터 시작하여 정리하였다”⁴¹⁾라고 하는 등 『禮記淺見錄』의 여러 곳에서 이 원칙을 거듭 밝힘으로써, 이것이 편차 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의례의 내용 또는 윤리적인 측면의 輕重을 판단하여 중한 것부터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曲禮 上」의 賓主의 禮에 대한 설명에서 “드러진 바의 輕重으로 순서를 삼았다”⁴²⁾라고 한 것이나 「喪服小記」에서 “이 이하는 모두 喪葬의 禮를 말하였는데, 부모를 먼저 말한 것은 중한 것부터 시작한 것이다”⁴³⁾라고 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일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순서를 정하였다. 「檀弓 上」에서 권근은,

36) 『禮記淺見錄』 권2, 「曲禮 下」. “舊經雜記諸禮 文義不倫 今以父子君臣男女長幼朋友之倫 分其類 吉凶終始大小輕重先後之序 次其言 章分類合 井然有條 誠有便於初學之觀也.”

37) 『禮記淺見錄』 권7, 「曾子問」. “自始至終 分爲五節 在凶禮 則君喪第一 私喪第二 在吉禮 則朝祭第三 冠昏第四 而外事師行以下 爲第五節也.”

38) 『禮記淺見錄』 권2, 「曲禮 下」. “此節 首言天子及后夫人之稱號 次言王朝之官 次言列國諸侯及夫人以下之稱號 次言列國之大夫. 舊本多失次 今悉正之.”

39) 『禮記淺見錄』 권4, 「檀弓 下」. “今以類而分之 又以尊卑之序而次之.”

40) 『禮記淺見錄』 권5, 「王制」. “自三公至元士之爲臣 所食田錄各有其次 而尊卑之等内外之辨 明且備矣.”

41) 『禮記淺見錄』 권13, 「喪服小記」. “舊本錯亂無次 今姑先以自貴者而始也.”

42) 『禮記淺見錄』 권1, 「曲禮 上」. “今以文勢及所獻輕重爲次.”

43) 『禮記淺見錄』 권13, 「喪服小記」. “此下皆言喪葬之禮 先言父母 自重者而始也.”

이상 한 장은 始死之服으로부터 殯·葬·祥·禫에 이르기까지 上下通行의 禮이다. 經의 舊文은 그 次序를 잃은 것이 많으므로 이제 일의 선후에 따라 편차를 지으니, 終始의 節目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 한 장을 이루었다.⁴⁴⁾

라고 하여, 喪禮나 祭禮의 세부적인 예제들을 정리할 때는 일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다. 喪·祭禮가 섞여 있을 때 喪禮를 먼저 기록하고 祭禮를 나중에 기록한 것도 이 원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⁴⁵⁾

이 세 가지 기준 외에도 권근은 문장의 首尾相應 및 文勢 등을 고려하여 원문의 순서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또 권근은 한 절이 끝나고 다음 절로 넘어갈 때에는 다음 절의 첫 문장에서 앞 절의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두 절의 연결 고리가 되어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禮記淺見錄』의 편차 조정 방식과 적용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편차 조정은 다른 『禮記』 주석서에서는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禮記淺見錄』만의 특징이다. 그리고 『禮記淺見錄』의 권근 주석이 기본적으로 『禮記集說』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근 나름의 기준이 적용되어 이루어진 편차 조정은 『禮記』를 이해하는 그의 독창적 시각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禮記淺見錄』의 편차 조정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를 통해 『禮記淺見錄』이 禮書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禮記』는 『儀禮』·『周禮』와 함께 禮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曲禮」·「檀弓」 등에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들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예제의 내용들이 일정한 순서나 기준 없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고 따라서 현실에서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권근은 이와 같은 『禮記』의 약점을 편차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禮記』 원문을 주제에 따라 장·절로 분류하고 다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순서에 따라 기록한 다음 주석에서 각 장·절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예제의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 결과 『禮記淺見錄』은 예제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또 실생활에서 의례를 시행할 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참고할 수 있는 禮書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禮記淺見錄』을 저술한 권근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권근이 『禮記淺見錄』 저술을 통해 추구한 것은 『禮記淺見錄』의 학습을 통해 禮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 禮의 정신과 제도가 확립된 이상 사회를

44) 『禮記淺見錄』 권3, 「檀弓 上」, “右一章 自始死之服 至於殯葬祥禫 上下通行之禮. 經之舊文 多失其次 今以事之先後而次之 終始節目 稍爲完備而成章.”

45) 『禮記淺見錄』 권18, 「雜記 下」.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禮記集說』을 기본 주석으로 사용한 것도 초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받는 『禮記集說』의 특성이 자신의 저술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권근의 『禮記』 편차 조정에는 『家禮』와 『小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家禮』의 영향은 권근이 禮를 분류할 때 四禮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권근은 예제를 분류할 때에 冠·婚·喪·祭의 四禮體制에 기초하여 분류·정리하였으며, 서술 순서는 '喪 → 祭 → 冠 → 婚'의 차례를 따랐다.⁴⁶⁾ 또 喪禮의 세부 절차를 정리할 때에도 가능한 한 『家禮』의 순서에 맞추어 원문의 순서를 조정하였다.⁴⁷⁾ 이와 같은 시도에는 『家禮』의 형식에 맞추어 『禮記』의 편차를 정리함으로써 『禮記淺見錄』을 『家禮』와 같은 禮書로 만들고자 한 권근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禮記』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정리한 것은 『小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小學』은 여러 서적에서 반드시 배워 익혀야 할 중요 내용들을 뽑아 정리한 책인데, 내용 중 상당 부분이 『禮記』에서 인용되었다. 즉 『禮記』의 내용 중 日用之節의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주제별로 분류하여 참고하기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 『小學』이다. 권근이 『禮記』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장·절을 나눈 것도 이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小學』이 『禮記』의 일부 내용만 선별하여 정리한 것에 비해, 권근은 『禮記』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실제로 권근은 『小學』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⁴⁸⁾ 『小學』의 체제가 『禮記淺見錄』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禮記淺見錄』에 반영된 權近의 禮論

(1) 禮論의 기본 개념

『禮記淺見錄』에는 권근 禮論의 기본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권근의 禮論은 그의 경학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天人合一論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敬' 사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권근의 禮論이 가장 잘 피력되어 있는 편은 「禮器」로, 여기에는 禮의 개념, 禮의全體와 大用, 禮의 '經'과 '權' 등이 정리되어 있다. 이제

46) 『禮記淺見錄』 권7, 「曾子問」; 권10, 「郊特牲」; 권13, 「喪服小記」; 권17, 「雜記上」; 권18, 「雜記下」.

47) 『禮記淺見錄』 권3, 「檀弓上」; 권4, 「檀弓下」; 권17, 「雜記上」; 권18, 「雜記下」.

48) 권근은 1407년(태종 7) 3월에 올린 「勸學事目」에서 『小學』은 人倫과 世道에 있어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생도들이 『小學』을 먼저 강한 후에 다른 책을 공부하게 할 것과 생원시에 응시하려는 유생에 대해 먼저 成均正錄所에서 『小學』의 통부 여부를 시험하여 통과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다(『太宗實錄』 권13, 太宗 7년 3월 戊寅).

이 순서에 따라 권근의 禮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禮器』에서 권근은 “禮가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이 그릇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된다”⁴⁹⁾라고 하여, 禮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禮의 全體와 大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禮는 사람이 사용하는 바의 그릇이므로 사람이 행하는 道가 크게 갖추어져 있고 그 德이 매우 盛하다. 이것은 禮의 全體를 들어 말한 것이다. (….) 君子는 盛德의 禮가 있는 까닭에 능히 內外에서 협력하여 幽明을 통달하니 禮의 功用이 매우 지극하다. 이것은 大用을 들어 말한 것이다.⁵⁰⁾

즉 사람에게 道가 갖추어져 德이 성한 것이 禮의 全體가 되며 그 德이 사물에 두루 미처서 功用을 지극하게 하는 것이 禮의 大用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권근은 ‘修己治人’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禮의 盛德과 功用이 개인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으로 널리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그의 禮論에 경제론적인 목적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⁵¹⁾

이어 권근은 禮를 제정하는 과정 및 禮의 ‘經’·‘權’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先王이 立禮한 뜻을 인연하여 制作의 초기에 모두 事物의 마땅함에 맞도록 각각 정한 제도가 있었음을 말하였다. 위 글을 이어서 先王의 禮에 定制가 있지만 한편으로 때의 豐儉에 따라서 厚薄의 절도를 제어하였음을 말하였다. 사물의 마땅함(物宜)을 인연하여 禮를 세우면 定制가 있어 어지럽지 않으니 이것이 禮의 經이다. 때의 마땅함(時宜)을 인연하여 禮를 사용하면 절도를 제어하여 구차하지 않으니 이것이 禮의 權이다.⁵²⁾

여기에서 권근은 禮를 제정할 때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사물의 마땅함’ [物宜]이고 다른 하나는 ‘때의 마땅함’ [時宜]이다. ‘사물의 마땅함’은 하늘이 내린 사물의 이치, 天理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天理에 부합하도록 禮를 제정해야 이것이 定制, 즉 표준이 되어 사회의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권근은 이를 禮의 ‘經’으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때의 마땅함’이란 현실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禮의 ‘經’, 즉 표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실적인 상황에 맞도록 禮를 적절하게 가감하여 적용해야 고루한 폐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권근은 이를 禮의 ‘權’으로 정의하였다. 이

49) 『禮記淺見錄』 권9, 「禮器」, “禮爲人所用 猶其用器 不可一日而無者.”

50) 『禮記淺見錄』 권9, 「禮器」, “禮是爲人所用之器 故其爲人所行之道 無不大備 而其德爲深誠矣. 是舉禮之全體而言也. (….) 君子有此盛德之禮 故能協於內外而達於幽明 禮之功用 極其至矣. 是舉大用而言之也.”

51) 권근 예론의 경제적 면모에 관한서는 본고 3장 2절을 참조.

52) 『禮記淺見錄』 권9, 「禮器」, “此因上言先王立禮之意 而言其制作之初 皆因事物之宜 而各有定制也. 此承上文 言先王之禮 雖有定制 而又隨時風儉 以制厚薄之節也. 蓋因物宜而立禮 則有定制而不可亂 是禮之經也. 因時宜而用禮 則有節制而不可拘 是禮之權也.”

상을 종합해 볼 때 권근 예학의 핵심은 ‘마땅함’〔宜〕에 있다고 하겠다. 즉 物宜와 時宜를 참작하여 상황에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禮라는 것이다. 이는 “선왕이 禮 제정은 마땅함에 걸맞게 하였을 뿐”⁵³⁾이라는 언급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권근은 「檀弓 上」에서 “聖人の 일은 때를 인연하여 마땅함을 제어하므로 中道에 부합하지 않음이 없다”⁵⁴⁾라고 하였고, 聖人は 그 權이 中道에 부합하지 않음이 없지만 賢者는 마땅히 禮의 經을 지킬 뿐이라고 하였다.⁵⁵⁾ 또 「大傳」에서도 “제도에는 비록 損益이 있지만 綱常은 변할 수 없다”⁵⁶⁾라고 하였다. 이상의 주장들은 모두 時宜에 따른 변화가 중요하지만 그 변화는 반드시 中道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時宜에 따른 변화가 中道, 즉 禮의 經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權’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한 것이며, 차라리 禮의 經을 고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가 된다.

禮의 ‘經·權’에 대한 권근의 인식은 天人合一論⁵⁷⁾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禮運」에서 “聖人の 制禮와 君子의 修德은 모두 物理를 살피고 天時에 順하여 義를 이루는 것이다”⁵⁸⁾라고 하였다. 이는 곧 天理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禮를 제정하였다는 의미로서, “物宜에 맞도록 定制를 세운다”고 한 위의 인용문과 맥을 같이한다. 권근은 「禮器」에서 禮를 바르게 실천한 일을 서술할 때 ‘得其禮’라고 하지 않고 ‘得其道’라고 한 것에 대해 이는 禮가 道에 근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⁵⁹⁾ 여기에서 ‘道’가 天道·天理를 의미한다고 볼 때, 禮의 실천은 곧 天道·天理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樂記」에서는 “禮節樂化政行刑防”에 대해 “人欲을 금하고 天理로 돌아가게 하는 것”⁶⁰⁾이라고 하였으며, 「祭義」에서는 ‘合諸天道’를 해석하면서 天道에 부응하도록 禮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¹⁾ 이상의 내용

53) 『禮記淺見錄』 권9, 「禮器」. “此言先王制禮之事 以結上文多少之意 雖有不同 各稱其宜而已.”

54) 『禮記淺見錄』 권3, 「檀弓 上」. “聖人之事 因時制宜 無不合於中道也.”

55) 『禮記淺見錄』 권3, 「檀弓 上」. “聖人 禮義之所由出 (….) 其權度在我 而不合於中道也. 賢者 但當守禮之經也.”

56) 『禮記淺見錄』 권13, 「大傳」. “制度雖有損益 而綱常不得變易也.”

57) 天人合一論은 권근의 經學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다. 『禮記淺見錄』의 「禮運」과 「樂記」에는 天人合一論에 대한 권근의 견해가 잘 정리되어 있다. 먼저 「禮運」에서 권근은 “사람이 天地의 가운데 거하여 天地의 實理를 온전히 얻었고 天地의 秀氣를 얻어 능히 天地에 참여하여 化育의 功을 도우니 이것이 ‘人爲天地之心’이다”라고 하였다. 또 하늘의 理가 내려와 人物에 부여된 것을 ‘天命之性’이라고 규정하여, 사람이 하늘의 이치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人心이 그 바름을 얻으면 人事가 順해지고 天道가 그 이치의 常을 얻게 되지만, 人心이 그 바름을 잃으면 人事가 어지러워지고 天道도 또한 그 이치의 바름과 반대가 된다고 하였다. 「樂記」에서도 권근은 “性은 人心이 받은 바의 天理”라고 하였으며, 또 “‘人生而精 天之性也’는 내 마음의 이치가 곧 하늘의 性이라는 뜻이니, 이것은 하늘과 사람을 합하여 하나로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권근은 하늘의 理와 사람의 性이 동일하기 때문에 天과 人이 合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성리학적인 天人關係論에 입각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58) 『禮記淺見錄』 권9, 「禮器」. “蓋聖人之制禮 君子之修德 皆察物理順天時而致義者也.”

59) 『禮記淺見錄』 권9, 「禮器」. “不曰得其禮而言道 禮本乎道也.”

60) 『禮記淺見錄』 권15, 「樂記 上」. “禮節樂化政行刑防 此四者 其所以禁人欲而反天理者.”

61) 『禮記淺見錄』 권20, 「祭義」. “合諸天道者 天道每三月而小變 因天道之變 而益致其慕親之感也.”

들은 모두 권근이 ‘禮의 실천은 하늘과 사람이合一되는 과정’이며 따라서 ‘禮는 天人合一로 가는 통로’라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禮를 제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檀弓 下」에 기록된 다음의 말은 禮의 목적에 대한 권근의 시각을 보여준다.

예로부터 賢人은 항상 적고 不肖者는 항상 많아서 진실로 禮로써 제어하여 절도를 삼지 않으면 哀情이 孺子의 사모함과 같은 자는 비록 지나침이 있더라도 오히려 가하겠지만 不肖하여 슬픔을 잊은 자는 옳하고 배반하여 사람의 도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聖人이 禮節을 만들어서 賢者로 지나치지 못하게 하고 不肖者로 발돋움하여 미치게 하고자 하였다.⁶²⁾

즉 현자의 ‘過’나 불초자의 ‘不及’이 없는 中庸을 이루기 위해서 禮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나침은 혹 가하지만 불초하여 슬픔을 잊으면 사람의 도리가 멀해진다”라고 한 말은 권근이 현자보다는 불초자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불초자들을 禮로써 가르치고 교화하여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禮를 제정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근은 禮에 대한 학습과 교화를 매우 강조하였다. 그가 『禮記淺見錄』의 여러 곳에서 “禮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주장을 거듭했던 것도 모두 이런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권근의 禮論은 ‘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敬’은 天人合一論과 함께 권근 經學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요소이다. 권근은 『入學圖說』과 『詩淺見錄』·『書淺見錄』 등에서 敬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하였으며, 經筵에서 군주의 修身과 학문을 논할 때에도 敬을 체득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권근은 사람이 禮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敬’을 체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曲禮」에 대한 권근의 주석은 禮와 敬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권근은 「曲禮 上」의 서두에서 ‘毋不敬’을 禮의 전체로 규정하고 ‘嚴若思’·‘安定辭’ 등 禮의 모습들도 마음 속의 敬이 길 것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하였다.⁶³⁾ 또 「曲禮 下」에서도 禮義의 300가지 큰 것과 威儀의 3000가지 많은 것을 비록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요체는 단지 ‘毋不敬’ 한 마디에 있을 따름이며, 따라서 학자가 敬에 從事하여 근본을 세우고 「曲禮」에 기록된 의례의 내용들을 參究하여 힘써 행한다면 人倫의 道가 갖추어질 것이며 禮의全體가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⁶⁴⁾

62) 『禮記淺見錄』 권4, 「檀弓 下」, “自古 賢者恒少 不肖者恒多. 苟無禮制以爲之節 則有哀情若孺子慕者 雖過而猶可也. 不肖而忘哀者 則斯惡斯倍而人理減矣. 故聖人制爲禮節 使賢者不敢過 不肖者企而及.”

63) 『禮記淺見錄』 권1, 「曲禮 上」, “毋不敬者 統言禮之全體也. 嚴若思 敬之見於外者本乎中也. 安定辭 敬之存於中者發乎外也.”

64) 『禮記淺見錄』 권2, 「曲禮 下」, “禮義三百之大 威儀三千之多 雖未易言 然其要只在毋不敬一言而已. 學者 苟能從事於斯 以立其本 又能參究十有一章之旨而力行之 則人倫之道無所不備 而禮之全體不外是也.”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敬을 실천하는 것인가? 그는 「曲禮 上」의 전1장에서 敬의 실현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군자가 禮를 행할 때에 마음이 敬을 위주로 하여 儼若한 까닭에 밖으로 나타난 것에 스스로 踰節·侵侮·好狎하는 일이 없음을 말하였다. 배움의 공이 이루어지고 禮의 근본이 확립된다.⁶⁵⁾

즉 군자가 먼저 敬을 체득한 다음 그것으로 마음과 행동을 제어하여 踰節·侵侮·好狎 등 非禮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禮器」에서도 “禮가 비록 人情에 근본하지만 그 常情의 所欲에 가까운 것은 또한 非禮의 지극함이므로 군자는 敬謹한 마음을 가지고 감히 가깝고 더러운 것으로써 大祭에 진설해서는 안되니, 이 역시 人情을 인연하여 다스리는 것이다”⁶⁶⁾라고 하여 敬의 마음으로 人情의 욕심을 억제하여 禮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敬으로 人欲을 억제하는 것이 禮의 시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권근은 天人合一論과 ‘敬’ 사상의 바탕 위에서 자신의 禮論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詩淺見錄』과 『書淺見錄』의 내용을 보면 그의 天人合一論과 ‘敬’ 사상에는 경세론적 성격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이론에 기초한 권근의 禮論도 역시 경세론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절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권근의 禮論이 가지는 경세론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禮를 통한 ‘安民’의 실현

권근은 「曲禮 上」에서 “曲禮曰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를 「曲禮」전체의 經으로 규정한 후에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毋不敬은 禮의全體를 통틀어 말한 것이다. 儼若思는 敬이 겉으로 나타나고 中에 근본한 것이며, 安定辭는 中에 보존된 敬이 밖으로 발현된 것이다. 君子의 主敬한 功이 말과 외모에 들어난 것이 이와 같으니, 內外가 交讓하여 조금도 게으른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그 효과가 安民에 이른다. 이것이 修己治人의 道이며 學問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것이다.⁶⁷⁾

65) 『禮記淺見錄』 권1, 「曲禮 上」. “君子之行禮 內主乎敬而嚴若 故見於外者 自無踰節侵侮好狎之事矣. 事之功成而禮之本立矣.”

66) 『禮記淺見錄』 권9, 「禮器」. “禮雖本於人情 然其近於常情之所欲者 又非禮之至者也 故君子敬謹之心 不敢以近而褻者 陳於大祭 是亦因人情而治之也.”

67) 『禮記淺見錄』 권1, 「曲禮 上」. “毋不敬者 統言禮之全體也. 嚴若思 敬之見於外者本乎中也. 安定辭 敬之存於中者發乎外也. 君子主敬之功 見乎言貌如此 內外交養而無有一毫之慢 故其效至於安民. 此修己治人之道 學之成始成終者也.”

권근은 군자가 主敬한 功, 즉 禮를 실천한 효과가 安民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安民은 곧 정치·사회의 안정이라는 경세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禮가 바로 시행되면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어 백성들이 편안하게 된다는 뜻으로, 禮의 최종 목적이 安民, 즉 정치·사회의 안정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권근의 예론이 궁극적으로 경세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⁶⁸⁾ 권근은 여말선초에 관료로 활동하면서 당시의 정치·사회적 현실과 문제점들을 목격하였고, 그 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였다. 그의 해결책들은 관료 생활 중에는 상소를 통해 제시되었고, 유배기·은거기 중에는 학문적 저술을 통해 표출되었다. 『禮記淺見錄』은 바로 그러한 결과물의 하나이므로, 『禮記淺見錄』에 반영된 그의 예론이 경세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은 安民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曲禮 上」의 “道德仁義 非禮不成 教訓正俗 非禮不備 分爭班訟 非禮不決 君臣上下父子兄弟 非禮不定 宦學事師 非禮不親 班朝治軍蒞官行法 非禮威嚴不行 禱祠祭祀供給鬼神 非禮不誠不莊”에 대한 주석에서 “道德仁義는 안민의 근본이고 教訓正俗 이하는 안민의 일이다”⁶⁹⁾라고 정의하여 ‘教訓正俗’, ‘分爭班訟’, ‘君臣上下父子兄弟’, ‘宦學事師’, ‘班朝治軍蒞官行法’, ‘禱祠祭祀供給鬼神’ 등의 6가지를 安民의 일로 규정하였다. 즉 ‘道德’과 ‘仁義’에 근본하여 ‘教訓正俗’ 이하의 일들을 禮에 합당하게 시행하면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禮記集說』에서는 이 6가지 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① 教訓正俗: 윗사람이 가르침을 세우고 아랫사람을 훈계함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함.
- ② 分爭班訟: 일의 曲直과 是非를 구분하여 분명하게 밝힘.
- ③ 君臣上下父子兄弟: 義와 恩으로 인간관계의 질서를 확립함.
- ④ 宦學事師: 관리가 되기 위해 학문을 연마하고 스승을 섬김.
- ⑤ 班朝治軍蒞官行法: 조정의 서열을 고르게 하고 군대를 관리하며 벼슬에 나가 법을 시행함.
- ⑥ 禱祠祭祀供給鬼神: 사당에 기도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며 귀신에게 제물을 바침.

이상의 6가지 일은 내용상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과 교화를 통해 禮가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①·④·⑥이 이에 해당하고, 두번째는 상·하의 명분과 직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정치·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②·③·⑤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禮記淺見錄』에서 주장한 안민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권근은 학습과 교

68) 권근은 「樂記」에서 “大禮, 大樂, 揖讓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말하였으니, 이른바 ‘無爲而治 不動而化’라는 것이다”라고 하여 禮樂으로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9) 『禮記淺見錄』 권1, 「曲禮 上」, “道德仁義 安民之本也 教訓正俗以下 皆是安民之事也.”

화를 통한 禮의 확산과 정착 및 그에 따른 사회 질서의 확립을 통해 安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⁷⁰⁾ 따라서 아래에서는 권근의 安民策을 ‘學禮와 教化’와 ‘사회적 위계질서의 확립’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① 學禮와 教化

권근은 「禮器」의 첫 문장에 대한 주석에서 ‘釋回增美 措則正 施則行’은 學禮의 功과 行禮의 用으로, ‘如行箭之有均’·‘如松栢之有心’·‘貫四時而不改柯易葉’은 德이 자기 몸에 이루어진 것으로, ‘外諧而內無怨’·‘物無不懷仁鬼神饗德’은 德이 물건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어 그는,

禮의 器는 그 體가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으므로 그 用도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몸에 배우면 능히 그 사악함을 제거하고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으며, 일에 배풀면 바르게 되고 사람에게 배풀면 행하여져서 밖으로 英華의 발함이 나타나고 안으로 貞固의 지킴이 보존된다. 비록 大節에 임하더라도 빼앗을 수 없는 뜻이 있으니 이것이 그 德의 盛한 것이다.⁷¹⁾

라고 하여, 禮의 大用이 실현되는 과정을 ‘學禮 → 行禮 → 德이 몸에 이루어짐 → 德이 물건에 미침 → 盛德을 이룸’으로 규정하였다. 이 주석은 禮의 全體와 大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禮를 시행하여 盛德을 이루기 위해서는 學禮, 즉 禮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권근이 學禮를 禮의 大用이 실현되는 출발점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근이 강조한 學禮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禮 학습이고, 둘째는 피지배층에 대한 교화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권근은 「內則」에서 “‘后王降德于民’을 먼저 말한 것은 民德의 厚함이 위사람의 德教에 근본하기 때문이다”⁷²⁾라고 하였으며, 「小儀」에서는 ‘后王降德于民’을 ‘明德新民의 일’이라고 규정하였다.⁷³⁾ 이는 지배층이 먼저 禮를 학습하여 체질화한 다음 이를 생활에서 실천하여 德을 쌓으면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 교화되어 禮를 실천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대부들의 禮 학습이 대민교화의 출발점이 됨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관점

70) 「王制」에서 권근은 “첫머리에 ‘冢宰制國用’을 서술하고 ‘司空度地居民’을 그 다음에 기록한 후에 ‘司徒之教’를 언급하였으니, 먼저 富庶한 후에 가르친다는 뜻이다”라고 하여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진 후에 교화가 시행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권근의 경제론적 관심은 교육과 교화 및 그를 통한 禮의 확립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71) 『禮記淺見錄』 권9, 「禮器」. “禮之爲器 其體無所不備 故其用無所不周. 學之於身 則能去其邪而益其美 措諸事而正 施諸人而行 外著英華之發 內存貞固之守 雖臨大節而有不可奪之志 此其德之盛者也.”

72) 『禮記淺見錄』 권11, 「內則」. “先以后王降德于民言之者 民德之厚 本於上之德教也.”

73) 『禮記淺見錄』 권14, 「小儀」. “內則所謂后王降德于民者 卽明德新民之事也.”

에서 볼 때 권근이 『禮記』의 편차 조정을 통해 『禮記淺見錄』을 일종의 禮書로 만들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배층의 禮 학습을 위한 교재로 삼으려고 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⁴⁾

『禮記淺見錄』에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禮의 덕목과 제도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사람이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권근이 가장 강조한 것은 '孝'이다. 권근은 「祭統」에서 “孝는 賢의 一端이지만 賢의 근본은 孝”⁷⁵⁾라고 하여 孝가 인간됨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文王世子」에서는 “(周公이) 伯禽을 매질하여 成王에게 보인 것은 곧 文王이 행한 바 三朝 이하의 愛親誠孝의 道이다”⁷⁶⁾라고 하여 교육에 있어서 孝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권근은 『禮記淺見錄』의 여러 편에서 효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曲禮」에서는 여러 예제들을 五倫의 항목별로 분류하면서 事親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傳3장으로 삼고, 이에 대해 “事親의 始終이 잘 갖추어져 있다”⁷⁷⁾라고 평가하였다. 또 「內則」에서도 子婦事親의 常禮와 非常禮, 孝子事親의 情, 養親飲食과 養老의 제도 등의 순서로 효에 관한 내용을 다른 예제보다 우선하여 정리하였다.

권근은 '孝'의 정신이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예제로서 제사를 중시하였다. 그는 효와 제사의 관계에 대해 “孝는 제사의 근본이고 禮樂이 말미암아 행해지는 바”⁷⁸⁾라고 정의하고, “효에서 제사보다 중한 것이 없다”⁷⁹⁾라고 하여 효의 윤리를 실천하는 제도로서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권근은 「曾子問」·「郊特牲」·「雜記 下」·「祭法」·「祭義」·「祭統」 등 『禮記淺見錄』의 여러 편에서 제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제사의 세부 절차들과 각각의 제사가 가지는 의의 등을 매우 심혈을 기울여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祭義」에서는 효자가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는 모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誠心을 다해 제사에 임하여 다른 곳에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평소 부모를 섬길 때에도 제사 때와 동일한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권근은 제사를 통한 효의 실천이 한 집안의 禮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 즉 禮治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祭義」에서 효와 제사 및 국가 경영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공자의 말을 인연하여 윗 장의 孝弟로써 天下國家를 영도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 編首

74) 『禮記淺見錄』의 편차 조정 과정과 禮書의 성격에 관해서는 본고 2장 2절의 내용 참조.

75) 『禮記淺見錄』 권21, 「祭統」. “前篇 每稱孝子之祭 而此言賢者 蓋孝者指其一端 而賢則行其全德 (….) 然其本則孝而已.”

76) 『禮記淺見錄』 권7, 「文王世子」. “撻伯禽而示成王者 卽以文王所行 三朝以下愛親誠孝之道也.”

77) 『禮記淺見錄』 권1, 「曲禮 上」. “右傳之三章 言父子之禮 生事葬祭 事親之始終具矣.”

78) 『禮記淺見錄』 권20, 「祭義」. “孝者 祭之本而禮樂之所由行也.”

79) 『禮記淺見錄』 권20, 「祭義」. “孝莫重於祭.”

로부터 여기까지가 한 절이 되어야 마땅하다. 제사를 인연하여 그 孝를 極言하였고, 또 孝를 인연해서 그 功用的 畧을 推言하여 그 效과를 나타내었다. 선왕이 천하를 다스린 바의 도가 반드시 孝에 근본하였고 孝는 제사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능히 부모를 섬기는 제사에 效를 다한다면 孝弟의 지극함이 神明을 통하고 四海에 밝혀져서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게 된다.⁸⁰⁾

즉 군주가 국가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주가 스스로 孝弟의 禮를 실천하여야 하며, 孝弟의 禮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라는 것이다. 권근은 「郊特牲」에서도 “郊·社의 禮와 禘·嘗의 義에 밝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이 쉽다. 그러므로 그 義를 알아서 공경하여 지키는 것이 天子가 천하를 다스리는 道이다”⁸¹⁾라고 하였고, 「祭統」에서도 “제사에 施惠의 법이 있다”⁸²⁾라고 하여 제사가 정치의 도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권근은 學禮와 敎化的 핵심으로 效와 제사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그가 조선훈에 올린 여러 시무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근은 1399년(정종 1)과 1401년(태종 1), 그리고 1403년 등 3차례 상소를 올려 시무책을 건의한 바 있는데, 세 번 모두 效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1399년의 상소에서 권근은 “효는 인륜의 근본이고 王化的 근원”이라고 하면서 대상왕인 태조에게 존호를 올려서 孝敬을 극진히 할 것을 건의하였고,⁸³⁾ 1401년의 상소에서도 대상왕에 대한 정성과 效도를 독실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⁸⁴⁾ 또 1403년의 상소에서는 災異를 그치게 하는 방도의 하나로서 왕이 먼저 아버지를 섬길 때 誠孝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⁸⁵⁾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效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왕이 먼저 孝를 행하여 誠孝의 실천을 지극히 함으로써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어서, 지배층이 먼저 모범을 보여 피지배층을 교화해야 한다는 권근의 기본 인식을 잘 보여준다.

권근이 『孝行錄』의 註解와 跋文을 지은 것도 效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孝行錄』은 권근의 선조 權傳가 노년이 되자 그의 아들 權準이 아버지를 위안하기 위해 24개의 孝行을 선별하여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현의 讚을 받아 만든 것에

80) 『禮記淺見錄』 권20, 「祭義」. “此因孔子之言 以明上章孝弟以領天下國家之意. 右自篇首至此 當爲一節. 蓋因祭而極言其孝 又因孝而推言其功用之大 以著其孝也. 夫先王所以治天下之道 必本於孝 而孝莫重於祭. 故能盡孝於事親之祭 則孝弟之至 通乎神明 光于四海 而天下無不治矣.”

81) 『禮記淺見錄』 권10, 「郊特牲」. “明乎郊社之禮禘嘗之義 則治國其如視諸掌矣. 故知其義而敬守之者 天子所以治天下之道也.”

82) 『禮記淺見錄』 권21, 「祭統」. “此言祭終之餼 (….) 餼酸者 善終之道 又有施惠之法.”

83) 『定宗實錄』 권2, 定宗 元年 10월 甲辰.

84) 『太宗實錄』 권1, 太宗 元年 1월 甲戌.

85) 『太宗實錄』 권6, 太宗 3년 8월 丙寅.

권근이 직접 38개의 효행설화를 추가하고 역시 李齊賢의 讚을 받아서 완성한 책이다. 이 책은 효행설화에 대한 최초의 집대성으로, 12구 또는 8구로 讚을 붙여서 노래로 불러 내용을 외우기 쉽도록 하였다. 권근의 註解는 운문의 讚을 산문으로 풀어 쓰고 다른 내용들을 더 보충하여 각 설화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으로, 효의 윤리를 널리 보급하고 고취시키려는 목적에서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孝行錄』의 주해가 『禮記淺見錄』의 마무리에 힘을 기울이던 1405년(태종 5) 여름에 지어진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禮記淺見錄』을 통해 효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권근은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서적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자신의 선조들이 지은 『孝行錄』이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註解를 지어 보급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사회적 위계질서의 확립

권근의 안민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 위계질서의 확립이다. 권근은 『禮記淺見錄』 전체를 통해 상하 위계질서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그는 「曲禮 上」에서,

禮가 있으면 상하의 명분이 정해져 서로 편안하다. 禮가 없으면 是非爭亂하여 반드시 위태롭다. 禮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함이 이와 같다.⁸⁶⁾

라고 하여 禮는 상하의 명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禮運」에서도 “禮가 있으면 分을 얻어 편안해지고 禮가 없으면 分을 잃어 위태로워진다”⁸⁷⁾고 하여 상하의 질서를 분명히 하는 것이 安민의 길임을 강조하였다.

상하의 명분과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권근의 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禮記淺見錄』의 편차조정 방식이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권근은 『禮記』 원문의 편차를 조정하면서 나름의 몇가지 기준을 세웠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貴하고 重한 것을 먼저 기록한 다음 賤하고 輕한 것을 나중에 기록하는 것’이었다. 즉 가장 귀하고 중한 신분의 禮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 점차 천하고 낮은 신분의 禮를 차례대로 기록함으로써 신분적 차이에 따른 禮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었다. 이러한 원칙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曲禮 下」이다. 「曲禮 下」는 전8~10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권근은 각 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전8장: 天子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吉凶과 終始와 稱號가 다른 禮를 말하였다.

◎ 전9장: 天子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尊卑와 小大와 儀則이 다른 禮를 말하였다.

86) 『禮記淺見錄』 권1. 「曲禮 上」. “有禮 則上下分定而相安 無禮 則是非爭亂而必危 禮之於人 其重如此.”

87) 『禮記淺見錄』 권8. 「禮運」. “人有禮 則得其分而安 故有必生之道 無禮 則失其分而危 故有必死之理.”

◎ 전10장: 上下의 通禮를 두루 말하였다.

즉 권근은 「曲禮」에 기록된 여러 가지 예제들을 정리하면서, 먼저 천자부터 서인까지 신분에 따라 차별되는 예제들을 “貴한 것에서 賤한 것으로”라는 기준에 따라 차례로 기록하 다음 마지막 10장에서 신분적 상하의 구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禮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는 권근이 공통적인 禮보다 신분에 따라 차별되는 禮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권근은 「玉藻」에서 천자의 禮와 제후의 禮가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王制」에서는 爵祿의 제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존비·차등·내외의 분별을 엄격히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상하·귀천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권근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사회적 위계질서의 확립에서 권근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올바른 군신관계의 정립이다. 권근은 『禮記淺見錄』의 여러 곳에서 군신간의 위계질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신하의 권력이 임금을 압도하는 것이 정치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제1요인이 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禮運」과 「郊特牲」에 잘 나타난다.

「禮運」에서 권근은 먼저 「僭君」과 「協君」에 대해 “僭君은 諸侯가 天子에게 참람되게 행하는 것이고 協君은 大夫가 임금을 협박하는 것”⁸⁸⁾이라고 하여 이것이 禮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위에서는 兵革을 私家에 보관하는 것을 말했고 다음에는 大夫가 官을 갖추는 것을 말했으니 이는 大夫가 浸強한 것이다. 그런 후에 家僕이 지위를 얻어 公臣들과 섞여서 거하며 衰裳으로 入朝하여 私家와 구별이 없으니 임금의 勢는 날로 쇠미해지고 臣의 黨은 많아진다. 임금은 虛器만 가지고 있고 신하는 政柄을 擅斷하니, 어찌 임금과 신하가 並尊하여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⁸⁹⁾

라고 하여 신하의 권력이 군주를 압도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또 “君臣上下가 각각 정한 분이 있으니 나라를 함께하여 上下의 분이 없게 되서는 안된다”⁹⁰⁾라고 하였다. 이는 “位는 임금이 관장하는 것이므로 (신하가) 도모할 수 없다”⁹¹⁾라는 「檀弓」에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군주의 직분과 신하의 직분을 엄격히 구분하고 신하의 월권을 경계하는 권근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물론 권근은 군주와 신하 사이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문병이나 弔喪 이외의 일로 신하의 집에 들

88) 『禮記淺見錄』 권8, 「禮運」. “僭君 言諸侯之僭天子 協君 言大夫之協其君也.”

89) 『禮記淺見錄』 권8, 「禮運」. “上言兵革藏於私家 次言大夫具官 是大夫浸強也. 然後 家僕得位而與公臣雜居 衰裳入朝而與私家無別 君之勢日以微 臣之黨日以衆 君擁虛器而臣擅政權 豈非君與臣並尊而同制一國也哉.”

90) 『禮記淺見錄』 권8, 「禮運」. “君臣上下 各有定分 不可同國而無上下之分也.”

91) 『禮記淺見錄』 권3, 「檀弓 上」. “位者 君之所司 不可謀也.”

어간다면 이는 신하가 충애를 굳건히 하기 위해 아첨하는 것이거나 군주가 꺾박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굽힌 것 중 하나이며, 따라서 임금이 신하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서로 戲虐하면 끝내는 敗禮의 禍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주가 신하의 권력에 압도당하지 않고 상하의 명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군주가 禮의 大柄을 잡고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신간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하는 권근의 태도는 「郊特性」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권근은 「郊特性」의 ‘大夫享君’에 대해 “이는 「禮運」의 ‘君臣爲虐’의 뜻이다. 후에는 諂媚의 失이 있고 強에는 僭逼의 患이 있다. 強한 신하를 제거하지 않으면 大阿가 거꾸로 되어 장차 不測의 禍가 생긴다”⁹²⁾라고 하여, 신권이 군주권보다 강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군주의 禮와 신하의 禮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 다음 “그 禮가 같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僭亂하여 上下의 구분이 없어서는 안된다”⁹³⁾라고 주장하였다.

권근이 사회적 위계질서의 확립, 특히 군신간의 위계 확립을 강조한 것은 고려말에 자신이 목도했던 정치적·사회적 혼란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근이 관료로 활동했던 고려말은 정치·사회적 모순과 부패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恭愍王은 개혁 실패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은 채 비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하다가 측근에 의해 살해되었다.⁹⁴⁾ 뒤를 이은 禡王도 즉위 초에는 한때 학문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지만,⁹⁵⁾ 초반 2~3년 이후 점차 학문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방탕하고 무절제한 생활로 일관하였다. 이에 따라 국정은 李仁任·池淵·林堅味 등으로 대표되는 권신들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인사·조세 등 행정 운영의 문란이 초래되었다. 또 권세가들의 탈법적인 토지 점령과 農莊 경영으로 인해 자영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농장에 흡수되어 소작농이나 노비로 전락하였으며, 농장에 흡수된 농민들이 私民化되면서 조세 수입에 큰 차질이 발생하여 국가 재정이 부족하고 군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⁹⁶⁾

권근은 이상과 같은 고려말의 정치·사회적 혼란이 예제의 붕괴에 따른 사회적 위계질서의 상실, 특히 국왕권의 약화에 따른 군신간의 질서 붕괴에서 초래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禮를 통한 질서의 확립, 그 중에서도 군신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권근이 고려말에 상소 활동을 통해 군주의 수신과 학문 연마를 주장한 것, 『詩淺見錄』과 『書淺見錄』에서 三代 이상 군주들의 정치

92) 『禮記淺見錄』 권10, 「郊特性」. “大夫享君 卽禮運君臣爲虐之義 享有諂媚之失 強有僭逼之患. 強而不除 則大阿倒持 將有不測之禍.”

93) 『禮記淺見錄』 권10, 「郊特性」. “君臣之分 其禮不同如此 不可僭亂而無上下之分也.”

94) 金庠基, 1985,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613~615면.

95) 『高麗史』 권133, 列傳 46. 禡王 元年 正月·10月; 3年 10月.

96) 朴龍雲, 1988, 『高麗時代史』, 일지사, 671면.

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皇極의 역할을 강조한 것 등은 모두 이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왕자의 난 이후 權近이 주도했던 사병혁파는 군주의 위상과 군신관계에 대한 權近의 입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權近은 1400년(정종 2)에 대사헌에 임명되자 곧바로 사병혁파를 주장하는 소를 올렸다. 이 소에서 權近은 『禮記』 「禮運」의 “兵革을 私家에 감추는 것은 禮가 아니니, 이것은 人君을 협박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하가 私兵을 소유하면 반드시 強暴하고 참람해져서 임금을 위협하게 되므로 이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⁹⁷⁾ 이는 그가 『禮記淺見錄』에서 강조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한편 군주권 및 군신관계 정립에 관한 權近의 인식은 그의 정치적 행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군주의 위상 강화와 군신간의 엄격한 위계를 강조하는 權近의 입장이 왕권의 강화를 추구하던 태종에게 매우 유익한 이론적 배경으로 이용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왕자의 난 이후 權近이 태종의 신임을 받아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權近이 사병혁파를 주도한 것도 국왕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태종과 權近 두 사람의 입장이 일치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맺음말

『禮記淺見錄』은 權近의 여러 『淺見錄』 중에서 가장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내용도 풍부하다. 『禮記淺見錄』의 완성에는 약 15년이 걸렸는데, 이 기간은 당시 權近이 처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양촌에 은거하던 시기와 조선에 출사한 초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연구와 저술에 몰두했던 반면, 왕자의 난 이후에는 정치적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술의 진척이 매우 부진하였다. 이는 『禮記淺見錄』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禮記淺見錄』의 초·중반부는 편차 조정도 많이 이루어졌고 주석도 풍부한 반면, 후반부는 편차 조정이나 주석이 매우 소략하다.

『禮記淺見錄』은 ‘禮記』 원문 → 陳澧의 『禮記集說』 → 權近의 주석’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權近은 편차 조정을 통해 『禮記』 원문을 주제별로 분류·정리하였고, 『禮記集說』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기록하였다. 또 자신의 주석에서는 편차 조정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한편, 禮論에 관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특히 『禮記』 원문의 편차 조정은 순서없이 뒤섞여 있던 여러 예제들을 같은 주제의 내용끼리 묶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禮記淺見錄』이 禮書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97) 『定宗實錄』 권4, 定宗 2년 4월 辛丑.

권근은 天人合一論과 ‘敬’ 사상에 기초하여 자신의 禮論을 전개하였다. 그는 권근은 物宜와 時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각각 禮의 經과 權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天道에 부합하는 人事의 운영을 추구하는 天人合一論과 맥을 같이한다. 또 그는 敬을 마음에 체득하여 人欲을 억제하는 것이 禮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권근은 禮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安民에 있다고 하여 禮의 경세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는 지배층의 禮 학습과 실천 및 이에 따른 대민교화를 통해 禮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孝 윤리의 보급에 주력하였다. 또 그는 고려말의 정치·사회적 폐단이 사회 질서의 붕괴, 그 중에서도 군신관계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상하 신분질서의 확립과 군주권의 강화를 통한 군신관계의 정립을 강조하였다. 권근은 이상과 같은 자신의 경세론을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효행록』을 주해하고 사병혁파를 주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관료로서 현실 정치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권근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권근은 『禮記淺見錄』을 통해 『禮記』의 禮書化, 禮 교육의 사회적 확산 및 이에 바탕한 정치·사회의 질서 확립을 추구하였다. 바로 이 점이 『禮記淺見錄』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